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권리는 누가 지키는가?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국민 보호의 공백 -

작성자: 이윤석 박사

발행일: 2026년 8월 3일

발행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이 리포트는 한국 교회 목회자와 진지한 기독교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포트는 고유 방법론 SIEW Framework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자료 탐색·정리와 초안 작성 과정에서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주요 사실과 논거는 연구진의 검토·수정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내용과 판단에 대한 책임은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리포트의 저작권은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 이슈 한 줄 정의

-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은 있으나, 경찰과 중수청의 부실·위법수사를 독립적으로 바로잡을 장치를 약화시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중대한 공백 초래 우려가 있음

□ 현재 상황 요약

- 2026년 7월 31일 국회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임
- 일반범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하며,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됨
-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 등 직접적인 보완수사는 할 수 없게 됨
-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됐음

□ 핵심 문제

1. 사건 수사 기관의 오류를 다른 기관이 점검하는 상호검증 기능이 사라짐
2.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새롭게 발견되는 증거·공범·은폐행위를 즉시 추적하거나 증거 소멸을 막기 어려움
3.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은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이 직접 수사기록의 오류를 찾아내고 증거 확보와 법률 대응까지 스스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4. 국가의 전문적인 수사 오류 교정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면 경제력과 법률 지식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가 커질 수 있음
5. 경찰과 중수청에 주요 수사기능이 집중되는 반면 실질적인 외부 통제는 약화되고, 추상적인 공소기각 사유는 재판 지연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결론

- 일반 형사사건에서 작동해 온 직접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해서는 안 됨
-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필요한 보조장치이지만, 전문적인 수사권과 증거 확보 능력을 가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음
- 대통령은 현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권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강제와 단계적 시행 방안을 포함한 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함

문의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사무국 (홈페이지: www.siew.or.kr)

- 전화: 010-4682-0191 / 카카오톡 ID: siewsiew / 페이스북 그룹: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이메일: siewsince2021@naver.com / 후원: 농협 355-0077-2712-43 예금주: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S - Scan |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 핵심 질문: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수사·기소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며, 국민의 권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음

-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됨
- 일반범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대범죄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함
- 이는 검찰청의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담당기관, 사건처리 절차와 기관 간 책임관계를 전면 변경하는 대개편임

[2]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함께 폐지됨

-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고, 직접수사와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폐지했음
- 헌법상 영장청구권, 긴급체포 승인권과 변사자 검시권은 유지되지만, 검사는 송치기록의 누락과 모순을 발견해도 직접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됨
- 결국 기소의 책임은 공소청 검사에게 남겨두면서도, 그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직접 확인할 권한은 제거한 구조가 됨

[3] 직접 보완수사 대신 간접적인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강화됨

- 검사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와 채수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거나 담당 수사관의 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이는 수사가 아

니며 확보한 진술과 자료도 원칙적으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문제는 수사를 잘못된 기관이 다시 자신의 오류를 조사하게 되고, 검사는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데 있음

[4] 피의자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됨

- 압수수색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의무화는 강제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 인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사건기록 열람·복사권도 확대됐음
-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장애인학대 등 일부 범죄의 재정신청 범위를 넓힌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절차적 이의제기권의 확대가 다른 기관의 실질적인 재조사와 증거 확보를 대신할 수는 없음

[5]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됨

- 현행법에도 검사는 제1심 판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이 공소취소 권한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님
- 새롭게 추가된 것은 법원이 ‘중대한 위법수사’ 또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임
- 그러나 ‘중대한 위법수사’와 ‘현저한 일탈’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건별·재판부별 판단 차이와 재판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정치적 사건에서 범죄사실보다 수사 동기와 기소 재량을 둘러싼 논쟁이 재판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있음

[6] 개정 찬성 측은 검찰권 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면 자신이 세운 수사 논리에 매몰되어 객관적인 기소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보완수사가 새로운 혐의를 발굴하고 별건수사로 확대되는 우회적 직접수사의 통로가 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음
- 찬성 측은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징계요구와 피해자의 이의신청권만으로도

수사기관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과 모든 직접적인 교정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7] 실제 사건은 독립적인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줌

① [사례 1]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 경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광주지검은 휴대전화·블랙박스 포렌식과 영상 감정을 통해 성폭행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밝혀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음
-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기록의 누락과 증거 은닉·축소수사 정황이 드러났으며, 경찰 특별수사단도 최초 수사팀의 고의적인 증거 은닉을 확인했음
- 이 사건은 수사기관 내부 관계자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건을 같은 기관의 자기 검증에만 맡겨서는 안 됨을 보여줌

② [사례 2] 289억 원대 조직적 전세 사기 사건

- 경찰은 약 230명의 임차인에게 289억 원의 피해를 준 사건(부산에서 2019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약 230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에서 범죄집단 혐의에 대해 두 차례 불송치했음
-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조직원 5명을 추가로 밝혀내고 총책 등 7명을 기소했음
- 이는 다른 기관의 독립적인 재검토가 조직범죄의 전체 구조와 추가 공범을 밝혀낼 수 있음을 보여줌

③ [사례 3] 생후 4개월 영아 ‘해튼이 사건’

- 경찰은 2025년 10월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사건을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음
- 검찰은 약 4,800개의 홈카메라 영상과 음성을 분석하여 반복적인 폭행과 살해 고의를 밝혀내고, 친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음
- 직접 증거를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고의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임

④ [사례 4]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사건

-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누어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됐음
- 검찰은 장애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과 점주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했음
- 기소유예도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은 남지만, 경찰의 송치 판단과 별도로 기소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심사하는 기능이 필요함을 보여줌

⑤ [사례 5]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화물차 운전자의 억울함을 밝힌 사건

- 경찰은 화물차가 지나간 직후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
- 울산지검은 CCTV 화질 개선과 교통사고 재분석을 통해 화물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지 않았고 형사법적 인과관계도 없음을 확인해 혐의없음 처분했음
- 보완수사는 범죄 혐의를 밝히는 수단일 뿐 아니라 무고한 피의자를 형사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함

[8] 형사법 학자들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함

-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의 형사법 교수·연구자 62명은 2026년 7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전면 폐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음
-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는 동의하지만, 경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기 위한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권한 남용은 보완수사의 대상·범위·기간을 제한하여 통제할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9]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제도적 공백을 경고함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전진송치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사의 실질적인 점검·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수사기관의 오류와 은폐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경고했음
- 구 대행은 법안 통과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제도 개편을 책임지는 기관 내부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공백을 심각하게 우려했음을 보여줌

[10] 여성·인권단체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하고 있음

-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장애여성공감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공백과 지연의 부담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으며, 다른 단체들도 전건송치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보완·견제를 요구했음
-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늘리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록의 오류와 누락을 찾아내야 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떠넘겨질 수 있음

[11] 기독교계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됨

- 한국교회언론회는 2026년 7월 10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
- 보완수사권을 경찰 수사를 재확인하는 크로스체크이자 권력통제의 안전장치로 평가하고, 장윤기 사건을 독립적 검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음
- 기독교계 언론(국민일보 2026년 6월 4일 사설)에서도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주장이 제기됐음

[핵심 정리]

- 이번 개정안은 검찰권 남용 방지와 피의자·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기관과 다른 기관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고 오류를 교정하던 기능까지 폐지했으며,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음. 실제 사건과 피해자단체·형사법 학자들의 우려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가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약화할 수 있음

을 보여줌

■ I — Interpret |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보는가

✓ 핵심 질문:

“성경은 범죄를 다루는 국가권력의 역할과 한계,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 실제적 진실과 피해자 보호에 대해 어떤 원리를 제시하는가?”

[1] 모든 인간과 국가기관은 타락할 수 있음

-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타락하여 욕망·이익·두려움과 권력의 유혹에 의해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가르침
-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렘 17:9)는 원리는 개인뿐 아니라 인간이 운영하는 검찰·경찰·중수청·공소청과 법원에도 적용됨
- 검찰의 선의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과 새로운 수사기관의 선의를 당연하게 전제해서는 안 됨
- 인간의 타락을 진지하게 인정하는 제도는 선한 지도자를 기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악하거나 무능한 권력 아래에서도 불의를 제한하는 구조를 마련함

[2] 국가권력은 정의를 위해 위임받은 제한적 권력임

- 로마서 13장 1~4절과 베드로전서 2장 14절은 국가의 임무가 악을 징벌하고 선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국가기관은 스스로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수행하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 권한을 위임받았음
- 신명기 17장 18~20절은 왕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함을 가르치며, 모든 통치자와 국가기관이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함을 보여줌
- 형사사법기관의 정당성은 기관의 명칭이나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범죄를 억제하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나옴

[3] 국가는 정의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음

- 로마서 13장은 국가권력의 정당한 역할을 보여주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은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함
- 따라서 기독교인은 검찰·경찰·법원·정부와 어느 정당도 절대화해서는 안 됨
- 조직의 명칭과 소속을 바꾼다고 정의가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권력은 지속적인 감시와 교정을 받아야 함

[4]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는 인간의 타락을 고려한 일반은총적 지혜임

- 현대의 삼권분립과 수사·기소 구조가 성경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한 사람과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함
- 모세가 재판권을 여러 지도자에게 분담한 사건은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지혜를 보여줌(출 18:13~26)
- 신명기 19장 15절은 두세 증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잠언 11장 14절은 조언자가 많을 때 안전이 있다고 가르침
-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검증은 불필요한 중복이 아니라 인간 판단의 오류와 권력 남용을 줄이는 안전장치임

[5] 성경적 정의는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조사하도록 요구함

- 잠언 18장 17절은 먼저 말한 사람의 주장이 옳아 보이더라도 상대방의 진술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가르침
- 신명기 13장 14절과 17장 4절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자세히 묻고 살피고 조사하도록 요구함
- 최초의 진술이나 한 기관의 판단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다른 기관과 사람이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성경적 지혜에 부합함

[6]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함께 보호해야 함

- 출애굽기 23장 1~9절과 신명기 25장 1절은 거짓 증언과 부당한 판결을 금지하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도록 요구함
- 잠언 31장 8~9절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과 약자의 권리를 변호하도록 명령함

- 무고한 피의자를 만들지 않는 것과 범죄피해자를 방치하지 않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형사사법이 함께 달성해야 할 정의임
- 보완수사가 범죄자의 혐의를 밝히는 동시에 잘못 송치된 사람의 무혐의를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양면적 책임을 보여줌

[7] 정의로운 목적은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 추구되어야 함

- 검찰권 남용을 막는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사법체계를 급격히 변경하면 또 다른 불의가 발생할 수 있음
- 성경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롬 3:8)
- 특정 권력기관의 과거 잘못에 대한 분노가 다른 기관의 권력 집중과 통제 공백을 정당화해서는 안 됨
- 형사사법제도는 정당의 정치적 승패가 아니라 장기적인 법치주의와 국민 보호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함

[8] 교회는 공적 정의와 약자 보호의 책임을 감당해야 함

- 성경의 선지자들은 개인의 종교생활만이 아니라 재판의 부패, 권력자의 횡포와 약자에 대한 억압을 책망했음
- 교회가 형사사법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목적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데 있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와 무고한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음
- 교회는 검찰의 불의와 경찰의 불의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판하고, 모든 국가권력이 법과 정의 아래 있도록 요구해야 함
- 과장과 선동을 피하고 정확한 사실과 공정한 논증을 통해 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함

[핵심 정리]

- 기독교 세계관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검찰을 불신한다는 이유로 경찰과 중수청의 선의와 능력을 낙관하거나 상호견제 장치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봄.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는 모든 권력을 통제하면서 실체적 진실, 피의자의 인권과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함께 보호해야 함

■ E — Evaluate | 무엇이 왜곡되었는가

✓ 핵심 질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실체적 진실 발견, 피의자와 피해자 보호, 권력기관 상호견제와 법치주의라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1]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개혁 목적은 정당함

- 검찰이 직접수사와 기소를 함께 행사하면서 과잉수사·별건수사·표적수사와 정치 개입 논란을 초래한 문제는 부정하기 어려움
- 수사와 기소를 일정하게 분리하고 피의자신문 녹음, 압수수색 영상녹화와 피해자 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는 조치는 필요함
- 따라서 모든 개정 내용을 정치적 악의로만 평가하거나 과거의 검찰제도를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음
- 핵심 문제는 개혁 자체가 아니라, 개혁의 방식이 새로운 권력 집중과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는 데 있음

[2]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그 자체로 형사사법의 목적처럼 절대화됐음

-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지 형사사법의 최종 목적이 아님
- 최종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며 무고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음
- 기소 여부를 책임지는 검사가 증거의 누락과 모순을 발견해도 이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면 책임과 권한이 분리됨
- 형식적인 기관 분리가 실제 정의와 국민 보호보다 우선하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게 됨

[3] 보완수사요구는 직접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없음

- 보완수사요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사항을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간접적인 방식임

- 직접 보완수사는 참고인 조사, 디지털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증거와 공범을 즉시 추적하는 과정임
- 수사는 처음부터 모든 보완사항을 예상할 수 있는 정형화된 업무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의 성격과 관련자가 달라질 수 있음
-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더라도 실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판단과 증거 확보 기능까지 대체하기는 어려움

[4] 사건을 잘못 수사한 기관이 자신의 오류를 다시 검증하게 됨

-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의심되어도 공소청은 원칙적으로 같은 기관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함
- 이는 잘못 채점한 사람에게 재채점을 맡기면서 다른 사람이 답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와 유사함
-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옮기면 기록 파악에 다시 시간이 소요되고,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와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경찰과 중수청의 자기검증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음

[5]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

- 2025년 경찰 송치사건 약 75만 건 중 약 11만 건에서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졌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약 6만6천 건에 달했음
- 이는 모든 사건이 부실수사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상당수 사건에서 추가 증거와 법리 검토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줌
-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대한 징계·교체 제도가 존재했음에도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 서울의 한 성범죄 사건(2026년 3월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CCTV 확보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영상이 삭제됐으며, 이는 요구권만으로 증거 소멸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줌

[6] 피해자에게 국가의 오류 교정 책임이 전가될 수 있음

-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록의 오류와 누락을 찾아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움
- 아동·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이주민·고령자·서민은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기 어려움
- 국가기관이 해야 할 조사와 교정의 책임을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으로 대체하면 형식적으로는 권리가 늘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커짐
-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할 권리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실제로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임

[7]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에 대한 외부통제가 부족함

- 일반범죄는 경찰이, 중대범죄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담당하게 되지만, 공소청은 이들의 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음
- 검찰의 수사권이 분산되는 효과는 있으나 경찰과 중수청의 오류·은폐·정치적 편향을 교정할 장치는 약화됨
- 권력이 여러 기관에 나뉘었다는 외형보다 각 기관이 다른 기관의 잘못을 실제로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함
- 검찰권의 집중을 해소하면서 행정안전부 계열 수사기관의 권력 집중을 새롭게 방지해서는 안 됨

[8]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새로운 혼란을 만들 수 있음

- 위법수집증거는 기존 법률에 따라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고, 극단적인 공소권 남용은 기존 판례에 따라 통제할 수 있었음
- 그럼에도 추상적인 공소기각 사유를 일반화하면 거의 모든 중요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을 둘러싼 별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소기각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면 본안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재판 기간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
- 적용 범위와 기준, 기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시행해서는 안 됨

[9]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함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형사소송법 개정을 동시에 시행하려면 조직·인력·예산·전산망과 사건이관 규정이 완비되어야 함
- 수사 중인 사건, 압수물과 디지털 증거의 이관, 공소시효와 구속기간 관리, 피해자 통지 절차도 정비되어야 함
- 전문수사 인력을 어디에 배치하고 수사 역량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도 불확실함
- 충분한 시범운영과 모의훈련 없이 빅뱅식 전환을 추진하면 그 피해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감

[핵심 정리]

- 이번 개정안은 검찰권 남용을 개선하려는 정당한 목적과 일부 긍정적인 인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사통제, 피해자 보호와 독립적인 교정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음. 이는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경찰과 중수청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공백을 만들 위험이 있음

■ W — Way Forward |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핵심 질문:

“검찰권 남용을 막으면서도 수사기관의 오류와 은폐를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과 피의자·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함께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함

-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면서도 경찰과 중수청의 부실·위법수사를 독립적으로 교정할 대체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음
-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법안을 공포하는 것은 수사 공백, 증거 소멸과 피해자 보호 약화의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음
-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 범죄피해자와 무고한 피의자 보

호,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기준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함

- 국회는 엄격하게 통제되는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권과 피해자 보호, 수사 지연 방지 장치를 포함한 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함

[2] 엄격하게 통제되는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존치해야 함

- 검찰의 광범위한 직접수사권을 복원해서는 안 되지만,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는 직접 보완수사까지 폐지해서는 안 됨
- 살인·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대규모 사기, 증거 소멸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보완수사요구가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사건에 한정해 허용해야 함
- 수사기관 내부 관계자나 권력기관이 관련된 사건,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독립적인 재조사를 요청한 사건에서도 다른 기관의 직접 검증이 가능해야 함
- 별건수사와 무제한 수사 확대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의 필요성·범위·기간과 결과를 문서화하여 법원과 외부기구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함
-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오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임

[3]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국가의 수사책임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됨

-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은 필요하지만, 이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는 보조장치임
- 일반 국민은 수사기록의 오류와 증거 누락을 찾아내거나 CCTV·통신·금융자료 등을 확보할 전문성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스스로 대응하도록 하면 경제력과 법률지식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
- 국가는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사건을 직접 재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공적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함

[4] 보완수사요구는 직접 보완수사의 대체가 아니라 보조수단이어야 함

- 보완수사요구의 처리기한과 이행의무를 강화하더라도, 수사를 잘못된 기관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는 오류·소극수사·증거 은폐를 충분히 바로잡기 어려움

- 보완수사요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기존 결론이 형식적으로 반복되고, 증거 소멸이나 공소시효 임박의 위험이 있으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함
- 수사기관 내부 관계자나 권력기관이 관련된 사건은 같은 기관에 다시 맡기지 말고 다른 수사기관이나 독립 심사기구로 즉시 이송해야 함
-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명분이 아니라, 제한적 보완수사권과 함께 작동하는 다중 안전장치로 설계해야 함

[5] 공소기각 사유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 ‘중대한 위법수사’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현저히 불가능하게 한 경우로 한정해야 함
-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도 차별적·보복적 기소 등 공소권 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제한해야 함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기존 공소권 남용 판례,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함
- 판단 시기와 절차, 입증책임·불복방법과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경과규정을 구체화해야 함

[6] 준비되지 않은 전면 시행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함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충분한 준비 없이 동시에 시행해서는 안 됨
- 인력·예산, 전문수사 역량, 사건기록·압수물·디지털 증거의 이관 기준과 공소시효 관리체계를 먼저 완비해야 함
- 기관 간 전산망, 정보보안, 피해자 통지와 이의신청 시스템, 책임소재와 분쟁조정 절차도 시행 전에 구축해야 함
- 실제 사건을 전제로 한 시범운영과 외부평가를 거치고, 중대한 공백이 확인되면 시행일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함

[7] 교회와 기독교인은 정파가 아니라 진실과 공의의 편에 서야 함

- 교회는 검찰을 선한 기관으로 신성시해서도 안 되고 경찰과 중수청을 악한 기관

으로 단정해서도 안 됨

- 검찰의 표적수사와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 가능성도 비판해야 함
- 목회자와 기독교 지식인은 정치권의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법안 조문과 제도적 효과를 검토하여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고 위험은 분명하게 알려야 함
- 교회와 기독교 단체는 제한적 보완수사권, 독립적 수사통제기구와 피해자 보호를 대통령과 국회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함
- 기독교인은 어느 정당과 권력기관도 절대화하지 않고 진실·공의·약자 보호와 권력통제라는 일관된 기준으로 행동해야 함

[핵심 정리]

-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필요한 제도이지만, 전문적인 수사권과 증거 확보 권한을 가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음. 국가가 담당해 온 수사 오류의 교정 책임을 피해자 개인이나 같은 수사기관의 자기검증에 떠넘겨서는 안 됨. 대통령은 현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엄격하게 통제되는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권을 중심으로 피해자 참여권과 보완수사요구제도를 함께 갖춘 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함. 형사사법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을 법과 상호견제,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Action Checklist

- ☐ 나는 검찰권 남용을 개혁하는 것과 경찰·중수청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는 직접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이해했다.
- ☐ 나는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수사권과 증거 확보 능력을 가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인식했다.
- ☐ 나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수사 오류의 교정 책임을 피해자와 피의자 개인에게 떠넘길 경우, 경제력과 법률지식에 따른 권리구제의 격차가 커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 나는 검찰의 광범위한 직접수사권은 통제하되, 중대한 민생범죄와 증거 소멸 우려 사건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된 직접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이 법과 상호견제 아래 놓이고, 억울한 피해자와 무고한 피의자가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보호받도록 기도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함을 다시 확인했다.

■ Final Message

- 일부 정치 사건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통제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일반 형사사건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방임
- 형사사법 개혁은 검찰권을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검찰·경찰·중수청·공소청이 서로의 오류를 감시하고 교정하도록 해야 함
- 피해자의 이의신청권만 늘리고 국가의 오류 교정 기능을 축소하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음
- 국가는 수사기관의 잘못을 피해자와 피의자가 스스로 바로잡도록 떠넘기지 말고, 다른 기관이 직접 진실을 확인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함
- 검찰의 직접수사는 엄격히 통제하되, 중대한 민생범죄와 부실·은폐수사에 대한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안전장치로 존치해야 함

■ 기도 제목

1. 국가의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진실과 공의를 따라 일하도록
 - 검찰·경찰·중수청·공소청과 법원이 정치권력이나 조직의 이해가 아니라 법과 진실을 따르게 하시고, 권력 남용과 부실수사가 바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2. 국가가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 국가가 수사 오류를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경제력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공정한 조사와 보호를 받게 해 주십시오.
3. 억울한 피해자와 무고한 피의자가 함께 보호받도록

-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호소가 외면받지 않게 하시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제도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4. 교회가 정파를 넘어 공의와 약자 보호를 증언하도록

- 한국교회가 어느 정당이나 권력기관도 절대화하지 않고 사실을 바르게 분별하며, 권력의 상호견제와 약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게 말하고 행하게 해 주십시오.

※ 본 리포트는 2026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참고: 최근 SIEW REPORT 목록

- [2026년 제5호]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권리는 누가 지키는가?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국민 보호의 공백”
- [2026년 제4호] “인천시장 선거 송도1동·송도2동의 3,030표와 1,440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 통계적 의심과 민주주의 신뢰의 과제”
- [2026년 제3호] “선관위는 누가 감시하는가? -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의 신뢰, 그리고 교회의 책임”
- [2026년 제2호] “한국 상황에서 ‘유신진화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2026년 제1호] “6.3 지방선거,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 SIEW REPORT는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홈페이지(www.siew.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